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760
----------	------

발의연월일 : 2025. 1. 23.

발의자 : 이인선 · 고동진 · 배준영

김태호 · 최수진 · 김정재

이달희 · 김기현 · 성일종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